

청주지방법원 2024. 12. 18 선고 2023가단8053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1. C

소송대리인 D

2. E

변 론 종 결 2024. 9. 25.

판 결 선 고 2024. 12. 18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별지 변경된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주식회사 F(이하 'F'라 한다)는 2013. 11. 27. G 주식회사(이하 'G'이라 한다)로부터, 원고는 2022. 2. 4. F로부터 순차적으로 G의 D에 대한 대출금채권(2013. 12. 1. 기준 미상환 원금 17,116,284원)을 양도받았다.

나. 망 H은 2012. 12. 25. 유족으로 자녀들인 D과 피고들 및 망 I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, 망 H 소유의 충북 괴산군 J 대 1182㎡에 관하여 2023. 11. 9. 피고 C 앞으로 2012. 12. 25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다. 망 I은 2023. 3. 2. 사망하였는데, 망 I 소유의 아래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3. 8. 25. 피고 C 또는 피고 E 앞으로 2023. 3. 2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1) 충북 괴산군 K 대 385㎡, L 대 2208㎡ 중 1/4 지분

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

2) 충북 괴산군 M 대 836㎡ 중 1/4 지분, N 답 1921㎡ 중 1/4 지분, 충북 괴산군 O 답 19㎡ 중 1/4 지분, P 답 669㎡ 중 1/4 지분, Q 답 485㎡ 중 1/4 지분

피고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, 6 내지 12, 27, 28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이 사건의 쟁점

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D에 대한 양수금채권자로서 피고들과 D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. 피고들은 채권양도통지가 결여되어 있어 원고는 D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.

3. 판단

가. 관련 법리

1)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채무자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하고

이를 행사할 수 없다면 그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청구도 인용될 수 없다(대법원 1993. 2. 12. 선고 92다25151 판결, 대법원 2012. 3. 29. 선고 2011다81541 판결 등 참조).

2) 채권을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양도인에 의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주장을 할 수 없고(대법원 1992. 8. 18. 선고 90다9452, 9469 판결 등 참조), 채권양수인으로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채무자에게 채권양수를 주장(대항)할 수 있는 것이다(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90다카27662 판결, 대법원 2019. 5. 16. 선고 2016다8589 판결 등 참조).

나. 판단

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,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원고는 F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후인 2022. 3. 16. F의 대리인으로서 D에게 채권양도통지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나, 한편,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위 내용증명 우편물은 ‘수취인불명’의 사유로 D에게 배달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, 그 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채권양도통지 또는 채권양도에 대한 D의 승낙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는 F로부터 채권을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채권양도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D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주장을 할 수 없고, 따라서 D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청구도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성률

별지